

2015년 상반기 읍·면·동 자체 종합감사 결과

○ 감사대상 : 11개소(읍·면 4, 동 7)

- 읍·면 : 4개소 (돌산읍, 남면, 삼산면, 화정면)
- 동 : 7개소 (여서동, 둔덕동, 서강동, 광림동, 문수동, 쌍봉동, 동문동)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90건(시정 69건, 주의 121건)
- 재정상 조치 : 11,119천원
 - * 회수 4,662 / 지급 6,457
- 신분상 조치 : 24명(훈계 1, 주의 23)

□ 주요 지적사항(돌산읍)

○ 신용카드 사용내역 행정전산망 미공개(시정)

- ▷ 2013. 2. ~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건 5,547천원,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 사용내역 67건 123,391천원 사용내역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을 준수하지 않았음.

○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적정(주의)

- ▷ 직원사용 차류 4건 640,950원의 물품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 구입하는 등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음.

○ 이륜차사용신고 민원처리 (소홀)

- ▷ 2013년 2월 26일 민원인 ♕♦♦ 등 3명에게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양수인 서명 날인 누락 등 이륜자동차 민원처리에 대해 소홀히 함.

○ 인감증명 발급 업무 소홀(주의)

- ▷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발급대장에 대리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하나 받지 않는 등 인감증명 발급업무를 소홀히 함.

○ 장기입원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과다 지급(시정)

- ▷ 기초수급자인 ☆☆☆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3개월이상 입원한 1인 가구이면서 무료임차자로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2014. 7월부터 2015. 1월까지 7개월 동안 315,490원을 부당하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는 등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소홀히 함.

○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 경과자 재판정 소홀(시정)

- ▷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이 경과된 ♕♦♦ 등 4명에 대해서『장애등급 재판정』 안내(통보)는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 내에 재판정을 받아오지 않은 장애인 7명에게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등록증 반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등록장애인 재판정 업무를 소홀히 함.

○ 보안등 보수 교체자재 관리 소홀(시정)

- ▷ 보안등을 보수하고 발생한 폐자재를 반납(고재처리) 받지 않고 업체가 작성한 사진대장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음.

□ 주요 지적사항(여서동)

○ 기록물관리 추진 소홀(시정)

- ▷ 2012년도 생산분 기록물 인감증명 발급대장 등 64점, 288권, 2013년도 생산분 기록물 인감증명 발급대장 등 27점, 113권을 기록물 등록 정보에 반영하지 않는 등 기록물관리를 소홀히 함.

○ 쓰레기종량제 봉투 업무 추진 소홀(주의)

- ▷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판매실적이 없는 ◉◉◉◉ 등 쓰레기 봉투판매업소 7개소에 대하여 현지 실태파악을 통한 지정해지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쓰레기봉투 업무에 소홀히 함.

○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급 부적정(시정)

- ▷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등록장애인 ◇◇◇◇에 대하여 장애수당을 차오로 중복 지급하여 총 6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다른 1명에게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최초 장애수당 지급시 소급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수당 30,000원을 미지급하는 등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급 업무를 소홀함.

○ 신규 책정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지급 부적정(시정)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인 ◇◇◇ 등 2가구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최초 생활지원금 지급시 소급 지급하지 않거나, 과다 지급하는 등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함.

○ 보안등 유지 관리 업무 소홀(시정)

- ▷ 2009년~2013년까지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 및 수리대장을 작성하였으나, 2014년에는 수리내역에 대한 고장신고 접수 및 수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보안등 관리표찰은 전체 256개 중 153개만 부착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40%는 미부착한 상태로서 전체적인 보안등 유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주요 지적사항(둔덕동)

○ 신용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내역 행정 전산망 미공개(주의)

- ▷ 2014. 10. 22.일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 사용내역 1건 3,267천원 사용내역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요령을 준수하지 않았음.

○ 물품(소모품) 관리 소홀 (주의)

- ▷ 13건 3,112천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공공근로사업 및 자투리땅 꽃밭 가꾸기 관련 물품에 대하여 관리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인감증명 발급 업무 소홀(주의)

- ▷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민원인 ♪♪♪ 등 7건에 대하여 발급대장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수령인란에 본인의 경우에는 서명을, 대리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하나 받지 않는 등 인감증명 발급업무를 소홀히 함.

○ 사회복지통합업무에 따른 방문상담 소홀(주의)

- ▷ 2013년도 방문상담계획 73건을 미수립하였고, 계획 미수립건에 대한 방문 상담을 미실시 하는 등, 2013년도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업무를 소홀히 함.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부적정(시정)

- ▷ 장애인 ◆◆◆ 등 2명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면서 자동차가 장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본인용” 표지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보호자” 표지로 착오 발급하였고, 장애인 ████은 자동차가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본인용” 표지로 착오 발급하였으며, 장애인 ♣♣♣는 보행상 장애가 없어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나 “주차가능” 표지로 착오 발급 처리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정정 발급 조치하지 않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업무 소홀(주의)

- ▷ 2014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면서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납부의무자에게 독촉통지서를 고지하지 않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도로점용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함.

□ 주요 지적사항(남면)

○ 민방위대원 편성 및 장비 관리 소홀(주의)

- ▷ 2015년도 민방위대원을 확정하면서 통·리장 사실확인 등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 않았으며, 민방위장비 현황 관리 및 점검 또한 소홀히 함.

○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관리 소홀(주의)

- ▷ 주민등록번호정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재부여하면서 ◆◆◆ 등 5명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는가 하면 주민등록 번호부여대장의 매장마다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 관리에 소홀히 함.

○ 기초수급자중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재판정 소홀(시정)

- ▷ 기초수급자인 ☈☏☏ 등 2명에 대해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된 후 판정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재판정 통보는 했으나, 유효기간이 초과되었음에도 진단서 미제출자에 대해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처리하지 않는 등 근로능력 재판정 업무를 소홀히 함.

○ 보안등 보수 교체자재 관리 소홀(주의)

- ▷ 보안등 1,051건('13년 647건, '14년 404건)을 보수하고 발생한 폐자재를 반납(등주·고재처리) 받지 않고 업체가 작성한 사진대장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음.

○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정산 집행 부적정(시정)

- ▷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건설업자로부터 제출받지 않았고, 환경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는 청소인건비, 청소도구 구입비 등과 당해현장설치 근거 (사진)가 없는 방진덮개 설치비용 등으로 총 6건에 785천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주요 지적사항(서강동)

○ 이륜자동차 민원처리 업무 소홀(주의)

-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자 ☠○○ 등 8명에 대하여는 수입인지 대신 수입 증지를 첨부하였고, ☠▣▣ 등 8명에 대하여는 인지세(수입인지)를 받지 않고 등록 처리를 하였는가 하면, 양도증명서에 양도 연월일, 양수자 인적사항, 대표자 날인 등이 누락되는 등 이륜자동차 민원처리를 소홀히 함.

○ 기초수급자 중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 능력 재판정 소홀(시정)

- ▷ 기초수급자인 ☈☏☏ 등 3명에 대해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된 후 판정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재판정 통보는 했으나, 진단서를 미제출하여 판정 유효기간이 초과되었음에도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처리하지 않는 등 근로능력 재판정 업무를 소홀히 함.

○ 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회수 소홀(시정)

- ▷ 사망한 등록장애인 ※※※ 등 4명에 대하여 사망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등을 회수, 폐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 보안등 관리대장을 작성하였으나 점·소등 책임자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많고, 고장 및 노후보안등 보수와 교체내역 기록이 누락되었으며, 보안등 관리 표찰은 전체 370중 214개만 부착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42%는 미부착한 상태로서 보안등 유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업무 소홀(주의)

- ▷ 2014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면서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납부 하지 않은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기한 44일 경과 후 독촉통지서를 발부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도로점용료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함.

□ 주요 지적사항(삼산면)

○ 보안업무 추진 소홀(시정)

- ▷ 공직자 전시임무카드 정비, 비밀문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삼산면 통합 방위지원본부 및 상황실 운영내규를 생산하면서 접수대장에 등재하지 않았으며, 비밀문서에 문서번호, 접수일자도 기록하지 않았고, 매월 셋째주 수요일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지 않고 보안진단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보안업무 추진에 소홀히 함.

○ 산불방지 종합대책 자체 계획 업무 소홀(주의)

- ▷ 산불방지 예방활동을 추진하면서 자체실정에 맞는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산불방지 대책본부 근무명령부 결재가 누락 되는 등 산불방지 대책 업무를 소홀히 함.

○ 전입신고서 이장 사후 확인 관리 소홀(주의)

- ▷ 전입신고서 사후확인용 자료를 15일 이내에 출력하여야 하나 3개월이 지난 후에 출력하고, 관할 이장이 15일 이내 전입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거주 확인이 일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소홀히 함.

○ 신규 책정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소홀(시정)

- ▷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책정된 ◇◇◇등 3가구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최초 생계비 지급시 소급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생계급여 총 1,442,290원을 미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함.

○ 보안등 보수 교체자재 관리 소홀(시정)

- ▷ 총 604등의 보안등 중에서 451등에 대해서만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고 고장 수리내역을 기록하지 않고 있으며, 보안등 188건('13년 114건, '14년 74건)을 보수하고 발생한 폐자재를 반납(등주-고재처리) 받지 않고 업체가 작성한 사진대장으로만 확인 한 사실이 있음.

□ 주요 지적사항(광림동)

○ 직원 복무 관리 소홀(주의)

- ▷ 2013. 9. 13부터 2013. 9. 30까지 9일간, 사회복지□급 ○○○에 대한 연가를 분할하여 허가되지 않고 연가목적이 특별한 사유가 아닌 가사정리차로 허가하여 복무관리를 소홀히 함.

○ 신규책정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소홀(시정)

- ▷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책정된 ☐☐☐등 2가구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최초 생계비 지급시 소급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생계급여 총 758,000원을 미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 경과자 재판정 소홀(시정)

- ▷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이 경과된 ◇◇◇ 등 2명에 대해서『장애인등급 재판정』 안내(통보)는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 내에 재판정을 받아오지 않은 장애인 2명에게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등록증 반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등록장애인 재판정 업무를 소홀히 함.

○ 보안등 수리공사 준공검사 소홀(주의)

- ▷ 2014년 보안등 유지보수비를 집행하면서 전기공사 계약이므로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지출결의서를 잘못 사용하였으며, 보수공사 준공검사(감독)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수리계약 낙찰율 적용 부적정(주의)

- ▷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가 제출한 견적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요 지적사항(화정면)

○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연금) 지원 지급(주의)

▷ 차상위 장애수당(연금) 수급자로 신규 책정된 등록장애인 ♪♦♦ 등 2명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수당(연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최초 수당(연금) 지급시 소급 지급하지 않고 누락하여, 17개월에서 최대 19개월이 지난 2015년 5월에야 소급 지급하여,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연금) 총 126,800원을 지원 지급하는 등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연금)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함.

○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시정)

▷ 화정면 □□마을 ◆◆ ◆◆공사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건설업자로부터 제출받지 않았고, 당해 현장설치 근거(사진)가 없는 방진덮개 설치비용으로 119천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 건설공사 감독 업무 소홀(주의)

▷ 화정면 ◇◇마을 □□ □□공사를 추진하면서 투입자재(모래, 자갈 등 27㎥)를 소운반하면서 경운기 운반이 가능함에도 단가가 비싼 인력(지게) 운반으로 반영하여 제경비 포함 522천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음.

○ 건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주의)

▷ 화정면 ○○리 ☀☀ ☀☀공사 등 54건에 대하여 준공검사 후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요 지적사항(문수동)

○ 직원 복무 관리 소홀(주의)

▷ 사회 복지○급 □□□ 외 0명은 토·공휴일 산불비상근무를 하고 대체휴무일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하나 적계는 8일 많게는 26일 뒤에 대체휴무를 허가하는 등 직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함.

○ 민방위대원 편성 및 장비 관리 소홀(주의)

▷ 2014년도 민방위대원을 확정하면서 통·리장 사실확인 등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 않았으며, 민방위장비 현황 관리 및 점검 또한 소홀히 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시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규 책정된 ◇◇◇ 등 7가구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최초 생계비 지급시 소급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생계급여 2,807,050원을 미지급하였으며, 다른 1가구에 대하여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잘못 산정하여 488,07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신규 책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부적정(시정)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인 ♣♣♣ 등 3명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최초 아동양육비 지급 시 소급 지급하지 않거나, 과다 지급하는 등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함.

○ 건설공사 수의계약 낙찰율 적용 부적정(주의)

▷ ☀☀마을 ♣♣ ♣♣공사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가 제출한 견적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주요 지적사항(쌍봉동)

○ 세출예산 과목해서 부적정(주의)

- ▷ 공동주택관리소장과 간담회 개최에 따른 다과 등 3건 332,060원의 물품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 구입하는 등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집행 하였음.

○ 산불방지 대책본부 근무일지 소홀(주의)

- ▷ 산불방지 예방활동을 추진하면서 2013년·2014년·2015년 산불근무일지를 작성하면서 근무자 서명(날인)이 누락되고, 산불장비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하는 등 산불방지 업무를 소홀히 함.

○ 기초수급자 중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재판정 소홀(시정)

- ▷ 기초수급자인 ☆☆☆ 등 4명에 대해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된 후 판정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재판정 통보는 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진단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역 제출하여 판정 유효기간이 초과되는 등 근로능력 재판정 업무를 소홀히 함.

○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 경과자 재판정 소홀(시정)

- ▷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이 경과된 ○○○ 등 3명에 대해서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통보)는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 내에 재판정을 받아오지 않은 장애인 3명에게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등록증 반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등록장애인 재판정 업무를 소홀히 함.

○ 쌍봉동 ◆◆마을 ☆☆☆ ☆☆☆공사 준공검사 소홀(주의)

- ▷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신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요 지적사항(동문동)

○ 비전자 기록물 전산등록 미이행(시정)

- ▷ 2013년도 생산분 기록물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등 27점, 69권, 2014년도 생산분 기록물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등 90점, 179권을 기록물 등록 정보에 반영하지 않는 등 기록물관리를 소홀히 함.

○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소홀(시정)

- ▷ 2종 의료급여수급자 ○○○ 등 2가구에 대하여,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1종으로 종별 변경을 하지 않았고, 1종 의료급여수급자 ○○○은 근로능력이 있으므로 2종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리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소홀히 함.

○ 사회복지통합업무에 따른 방문상담 소홀(주의)

- ▷ 2014년도 방문상담계획 196건을 미수립하였고, 계획 미수립건에 대한 방문 상담내역을 미입력 하는 등, 2014년도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업무를 소홀히 함.

○ 공사의 담보책임존속기간중 하자검사 미실시(주의)

-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1인견적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주의)

- ▷ 1인으로부터 제출된 견적금액에 대하여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도로점용료 체납 독촉 기한 미준수(주의)

- ▷ 2014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면서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이 42일 경과하여 독촉통지서를 발부하는 등 도로점용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